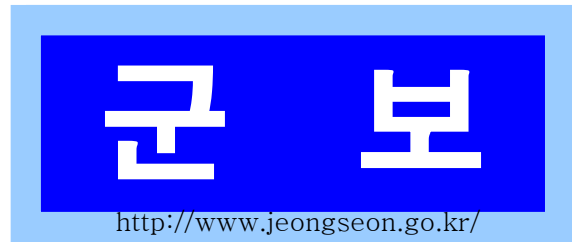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97호 2009. 7. 1. (수)

【규 칙】

- 정선군규칙 제1149호 정선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1
- 정선군규칙 제115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2
- 정선군규칙 제1151호 정선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6
- 정선군규칙 제1152호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14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09-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17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9-429호 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4
- 정선군공고 제2009-437호 분묘개장공고(2차).....26
- 정선군공고 제2009-445호 공시송달공고.....3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6 . 30 .

정선군규칙 제 1149 호

정선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연·혈연·학연”을 “지연·혈연·학연·종교”로, “특혜를 주어서는”을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관용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를 “관용차량·선박·항공기·건설중기·청사·관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외부강의등 신고”를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정선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규칙 중 일부 미비한 점이 있음에 따라 이를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종교편향 행위 예방 명문화(안 제6조, 개정)
 - 특정종교를 이유로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없도록 명문화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규정 보완(안 제13조, 개정)
 - 정부 및 군 예산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의 부가서비스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명문화
 - 항공마일리지, 정부구매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등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6 . 30 .

정선군규칙 제 1150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제2호”를 “제1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7조제1항제3호”를 “제17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7조제1항제6호”를 “제17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7조제1항제7호”를 “제17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7조제1항제8호”를 “제17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 제1항 제5호”를 “제17조 제1항 제6호”로 한다.

제16조 중 “제17조 제1항 제10호”를 “제17조 제1항 제11호”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29조 제6호”를 “제29조 제5호”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8의 비고란 제1호 중 “제17조제1항제4호”를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u>수급자증명서</u>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 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 함</u>
6	<u>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u>	<u>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 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 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u>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 8]

특별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제14조제4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 지도관	3급 · 지도관	4급 · 지도관	5급 · 지도관	6급 · 기능직 6급 이상 · 지도사	7급 · 기능직 7급 이상 · 지도사	8급 · 기능직 8급	9급 · 기능직 9급 이하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경 감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수 위 위 사	상 중 사 사	하 사
교육공무원 □□□ □ 사립학교교원포함 □□□ □	대학(교육대학 · 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정 인 사			
	초 · 중 · 고 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보급액라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보급액라 적용대상자			19호봉 이 상	13호봉 이 상	9호봉 이 상	8호봉 이 하		
관 사 · 검 사		9호봉 이 상	6호봉 이 상	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 상	7급	8급	9급 이 하
과 려 직 무 부 야 박 사 학 위 소 지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과려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 비 고 : 1. 위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특별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 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개 정 이 유

- 2009. 2. 6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 보완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따른 [별표 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 보완
 - 제13조 면접시험기준 관련, [별지 제11서식] 면접시험 평정표 신설

정선군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6 . 30 .

정선군규칙 제 1151 호

정선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을 “정선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을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는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중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체없이”를 “즉시”로 한다.

제13조 중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중 “직(계·등)급”을 각각 “직(계)급”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정선군수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기재란	①소 속		③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기능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⑤성명	한 글 한 자	⑥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						
⑧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0 정년일			
1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소속 기관 기재란	2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3 정 년	(세, 년)			
	4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별정직 ☐ 계약직 ☐ 고용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5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6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확인	인 사 담당관	(인)	연 금 담당관	(인)	감 사 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정선군수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 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1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2 ~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7. □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 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 일반직 ☐ 특정직() ☐ 기능직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정선군수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개 정 이 유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개정·시행('09. 1. 1)됨에 따라 명예퇴직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명예퇴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명문화**(제3조 및 별표 1)
 - 신청기간 : 명예퇴직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15일
 - 명예퇴직 예정일 : 짝수달 마지막날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명시된 내용 **정리·삭제**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재직기간 및 지급액 계산 방법
 - * 재직기간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정년 잔여기간 계산 방법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상의 정년 기준
 - 대간첩작전 등 수행으로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한 가산지급 기준
 - * 폐질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월봉급액의 1~4배)
- 개정된 내용에 맞게 서식 **변경** 및 일부 미비점 **보완** 등
 - 명예·조기퇴직신청서 및 명예·조기퇴직원, 경과조치 등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6 . 30 .

정선군규칙 제 1152 호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뱅킹시스템과 지-뱅킹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군금고 및 군금고 지출대행점은 지방재정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담당자가 전산입력한 정당한 채주에 대

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확인 등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핸드폰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 전산입력 등

제5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4조제3항·제109조·제1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군금고는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제1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0조의2에 따라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제11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세출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e-세출시스템」을 우리군 재무회계규칙에 반영하여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처리규정 신설(제50조의2)
 - 대상업무 : 지출원의 지급명령,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의 통지,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등
 -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에 따른 업무책임 규정
 -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급명령 전송
 -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전산자료 확인 등
 -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자료 전산입력 등
- 지급명령 및 영수인등의 규정에 전자적 처리 규정 신설
(제48조, 제51조, 제56조, 제77조, 제109조, 제110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 자금배정, 지급명령 및 영수인, 송금통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지급증명, 송금지급절차, 세입·세출일계표, 세입·세출월계표 등

정선군고시 제2009-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 06. 24.

정 선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km) (금회연장)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도로	군도	군도4호선 (선평~가수)	시점 : 남 면 광덕리 종점 : 정선읍 가수리	L=12.0km (L=2.29km)	정선읍 가수리	도로확·포장	
도로	군도	군도9호선 (유평~구절)	시점 : 동 면 화암리 종점 : 동 면 북동리	L=58.3km (L=1.52km)	동 면 북동리	도로확·포장	

2.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3. 사업시행기간 : 2008. 08 ~ 2012. 12

4.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등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 장 소 :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48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등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붙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노선명 : 군도4호(선평~가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	정선읍 가수리	193-2	학	6,134	837	국	정선군				
2	"	54-9	전	1,630	122	강릉유씨	영월군 영월읍 흥월리 105				
3	"	54-8	대	386	132	유대영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54-2				
4	"	54-11	창	994	126	유대영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54-2				
5	"	54-12	창		57	유대영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54-2				
6	"	54-13	전	442	287	유대영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54-2				
8	"	59-6	전	1,064	448	국	정선군				
9	"	59-5	전	628	130	유종열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4-4				
10	"	60-1	대	473	98	유종열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4-4				
11	"	61-1	대	208	105	국	정선군				
12	"	62-2	전	814	40	국	정선군				
13	"	77-2	전	2,771	11	유영희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78				
14	"	77-3	전	990	7	유영희	정선읍 가수리 78				
15	"	77-4	전		6	유영희	정선읍 가수리 78				
16	"	40-4	답	1,798	667	국	정선군				
17	"	38-4	답	298	11	국	정선군				
18	"	38-3	전	4,443	21	국	정선군				
19	"	36-2	전	2,896	1,128	유종열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79-4				
20	"	32-2	답	744	559	국	환경부				
21	"	191-1	전	783	240	국	환경부				
22	"	53-1	전	1,924	625	국	환경부				
23	"	52-1	대	575	279	국	환경부				
24	"	51-5	전	875	70	유한중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56				
25	"	51-4	전	1,398	78	유한중 외2인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56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26	정선읍 가수리	49-1	대	416	63	유순상 외 1인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56				
27	"	48-4	대	413	79	유대영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60				
28	"	48-5	전	1,129	113	유대영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60				
29	"	47-1	전	426	130	국	정선군				
30	"	46-3	대	324	177	국	정선군				
31	"	45-2	전	2,906	465	국	환경부				
32	"	44	대	694	531	국	환경부				
33	"	40-5	전	1,438	573	국	정선군				
34	"	37	대	327	327	유종열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79-4				
35	"	35-1	답	863	56	전순례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56				
36	"	34-1	답	734	101	국	정선군				
37	"	33	답	820	820	유대영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60				
38	"	30-3	답	860	188	유광열	정선군 북면 여량리 320 성도아파트 401				
39	"	산61-1	임	176,529	70	박양기외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77-13				
40	"	13-2	답	1,071	245	이영재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59				
41	"	3-3	전	6,575	2,019	이영근	정선읍 가수리 47				
42	"	산58-1	임	4,193,751	1,151	국	산림청				
43	"	30-4	답	1,021	310	유광열	정선군 북면 여량리 320 성도아파트 401				
44	"	28-1	답	783	321	국	정선군				
45	"	27-1	답	641	280	전인소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69				
46	"	24-1	답	1,183	512	국	환경부				
47	"	23-1	답	1,250	527	국	환경부				
48	"	20-1	답	1,388	663	유창길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49				
49	"	19-1	답	1,491	748	국	정선군				
50	"	16-1	답	1,385	579	국	정선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51	정선읍 가수리	15-2	답	1,388	328	강릉유씨군수공파 옹자증자증증회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60				
52	"	11-1	전	1,140	953	강릉유씨군수공파 옹자증자증증회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60				
53	"	12-3	대	655	13	구명희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45 한국아파트 101-502				
54	"	12-4	대		66	구명희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45 한국아파트 101-502				
55	"	12-5	전	479	400	구명희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45 한국아파트 101-502				
56	"	4-1	전	3,554	1,382	유성열	정선읍 북실리 616-3				
57	"	5-1	전	2,777	67	국	환경부				
58	"	산30-1	임	6,149	82	국	정선군				
59	"	산30-2	임		12	국	정선군				
60	"	산32-1	임	2,380	71	국	정선군				
61	"	산32-2	임		43	국	정선군				
62	"	7-2	전	3,930	1,268	국	정선군				
63	"	산29-2	임	14,182	958	유인규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건전리 633-9 반월빌라 에이동 301호				
64	"	1-3	전	14,311	1,972	국	정선군				
65	"	1-4	전		2,749	국	정선군				
66	"	산33	임	739,933	1,858	국	산림청				
67	"	50-1	전	2,423	31	유순상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56				
68	"	15-1	답	1,388	4	강릉유씨	정선읍 가수리 360				
69	남면 광덕리	636-5	전	4,492	1,507	국	정선군				

○ 노선명 : 군도9호(유평~구절)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	동화암리	583-3	임	14,529	2,157	국	정선군				
2	~	산267-4	임	3,105	142	국	정선군				
3	“	산267-5	임		52	국	정선군				
4	“	산267-6	임		358	국	정선군				
5	“	산267-7	임	2,798	16	국	정선군				
6	~	산266-4	임	3,658	1,087	국	정선군				
7	~	산265-1	임	19,438	130	윤지혜	서울 강서구 화곡동 370-82				
8	~	산266-2	임	2,028	2,028	국	정선군				
9	~	산266-1	임	1,719	1,719	국	정선군				
10	~	산266-5	임	1,521	75	국	정선군				
11	~	584-2	전	2,283	540	국	정선군				
12	~	산268-3	임	5,325	740	국	정선군				
13	“	산268-4	임	2,030	223	국	정선군				
14		585-3	임	3,185	14	국	정선군				
15	“	산269-3	임	482	17	김장수	평창군 평창읍 내화리1846				
16	~	산159-1	도	324	324	국	산림청				
17	“	산159-2	도	43	43	국	산림청				
18	~	산159-3	임	1,914	19	국	산림청				
19	동북동리	108-8	임	2,284	87	국	정선군				
20	~	108-9	임		363	국	정선군				
21	~	108-10	임		331	국	정선군				
22	~	산144-5	임	179,408	513	국	정선군				
23	“	산144-6	임		150	국	정선군				
24	“	107-3	임	2,047	83	국	정선군				
25	“	107-4	임		138	국	정선군				
26	“	106-3	임	8,319	527	국	정선군				
27	“	94-3	전	4,215	754	국	정선군				
28	“	104-1	전	6,000	481	국	정선군				
29	“	102-2	전	3,052	520	국	정선군				

○ 공사명 : 군도9호(북동재)도로확·포장공사



정선군공고 제2009-4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9. 06. 19.

정 선 군 수

1. 제 목 : 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9. 06. 20 - 07. 03(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법인)	주 소	공매물건	송달불능 사 유
그린크린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산55-2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145-19 임야 755㎡	이사감
김유환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820 미당 한마아파트 102동 104호(10통2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132-51 대25㎡	수취인불명
안영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6-1(6통2반)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17-1 전25㎡	이사감
조강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351(1통3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443-80 대292㎡	이사감
나무와나무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19-39 주택	이사감
코랜리얼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5-15 장원빌딩 502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산221-12 임야 1323㎡중 주식회사코랜리얼티 지분전부	이사감
대호피앤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3-1 거평타운 310 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245-4 임야 99172㎡	수취인불명
배일득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662 청솔아파트 107 동 1104호(25통9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327 전 1147㎡	수취인부재
갑부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6-21 청합빌딩 503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52-9 임야 2812㎡중 공유자 갑부산업(주)지분전부	수취인불명
이창선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매탄동 1176-11 102호(16통4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67 건축물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67 대1089㎡	수취인불명
김영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45-22(46통4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347 전 2797㎡	주소불명
우희순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고기동 240-5 (2통2반)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14 전 4252㎡	폐문부재
김원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6-6 미소빌아파트 1109호 (5통9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344-29 도로18㎡	수취인부재
이재권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24-38(13통4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303 전 8287㎡	수취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 압류부동산 공매를 위한 공매예고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 실시

위의 내용을 공문으로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5. 문의처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징수계 (☎ 033-560-2292). 끝.

정선군공고 제2009-437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당해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분묘수	비 고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5-2	임	1	

2. 개장사유 : 군도2호(조동~북실)도로확포장공사 구간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이전장소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정선군 하늘터)
- 화장후 납골당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 게재일로부터 3개월

6. 신 고 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033-560-2485)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2009년 06월 24일

위 공고인 : 정 선 군 수

일련번호	분묘의 소재지	분묘의 기수	용도구분	비고
계	1필지	1		
1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5-2	1기	묘지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5-2번지

사 진 대 장

분묘의 위치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5-2번지
사 진 설 명	군도2호(조동~북실)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무연묘 - 전경



정선군공고 제2009-4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채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 06. 29. ~ 2009. 07. 13. (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				
2. 당 사 자	성 명	강성환 (540215-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3-1 논현휴먼시아 508-120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 -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전매계약을 체결(미등기 전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과태료 + 가산금)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 ⇒ 19,835,710원 × 2건 = 39,671,420원				
5. 법 적 근 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 - 동법 제11조 및 제12조 - 동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5조				
6. 문 의 사 항	기관명	정선군청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당자	이창남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연락처	☎ 033-560-2269 FAX : 033-560-2307				
7. 유 의 사 항		※ 독촉된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거 강제징수(압류)함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최고77%)], 제52조[관허사업 제한], 제53조제1항[신용정보의 제공], 제54조[감치]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 06. 29.

정 선 군 수